

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2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월 25일

발 의 자 : 서윤기·김용석(도봉)·이순자
최관술·김상훈·송재형
유광상·김인호·김광수(도봉)
김진철·진두생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청년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제한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청년공간의 민간에의 위탁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, 사회참여 확대,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년공간”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,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5조(청년공간의 사용 등)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·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

2.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

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운영 등)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